#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38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임미애·정준호·윤준병

이병진 · 김남근 · 송옥주

박지혜 • 박민규 • 이광희

정성호 · 허성무 · 문대림

문금주 • 권칠승 • 한민수

의원(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예방 및 치료(이하 "수목진료"라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일정한 기술·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진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업무 범위에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나무의사들의 역량강화와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수행 업무와 경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목진료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수목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의 수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보호·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나무의사는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수목진료와 이력관리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 나.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9제6항 신설).
- 다.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훈련,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11제4항 신설).
- 라.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체계인 수 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15 신설).
- 마.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등을 인정받으려면 산림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신고받은 나무의사 등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16 신설).

법률 제 호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중 "예방하거나 치료하기"를 "예방[수세(樹勢) 유지· 관리를 포함한다]하거나 치료(수세 회복을 포함한다)하기"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이전"을 "이전하여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기 점검은 나무의사가 하여야 하고 나무의사는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수목진료와 이력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 1.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 요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
- 2. 개인소유의 수목으로서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3.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150세

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 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11제3항 중 "사항, 협회의 업무"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 훈련
-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조사
- 3. 수목진료 기술진흥 및 정보 교류
- 4. 나무의사의 현황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 5.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⑤ 협회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 4. 나무병원의 실적 등 관련 정보
-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 (이하 이 조에서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 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5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의9제7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7조제3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6.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나무의사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16 개정규정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	6의2
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	
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	<u>예방[수세(樹勢)</u> 유지·
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관리를 포함한다]하거나 치료
	(수세 회복을 포함한다)하기-
6의3. ~ 14. (생 략)	6의3. ~ 14.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
전 등) ① (생 략)	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	②
를 <u>이전</u> 하는 경우에는 나무의	<u>이전하여 관리</u>
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u>.</u>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	③
청장은 보호수의 보호 ·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야 한다. <u>&lt;후단 신설&gt;</u>	<u>이 경우 정기 점</u>
	검은 나무의사가 하여야 하고
	<u>나무의사는 보호수의 보호·관</u>

- ④·⑤ (생략)
-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 ③ (생 략)
  -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 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⑤ (생략)
  - <신 설>

리에	필요	한	수목	-진료와	이란
관리	등을	하	여야	한다.	

- ④·⑤ (현행과 같음)
- - ~ ③ (현행과 같음)

(4)	 	

---. <단서 삭제>

- 1. · 2.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 료를 할 수 있다.
- 1.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
- 2. 개인소유의 수목으로서 소유

<신 설>

- ⑥ (생략)
- · ② (생 략)
  -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3.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 한다)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 ⑦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 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 ----사항-----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훈련
-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조사
- 3. 수목진료 기술진흥 및 정보 교류

<신 설>

④ (생 략) <신 설>

- 4. 나무의사의 현황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 5.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⑤ 협회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 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 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 4. 나무병원의 실적 등 관련 정

<u>보</u>

-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 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 력 및 자격 등(이하 이 조에서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 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 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 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 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 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 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 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제54조(벌칙) ①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 (생 략) <신 설>

8. • 9. (생략)

- ⑥ ~ ⑧ (생 략)
- 제57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5. (생 략) <신 설>

<신 설>

2. · 3. (생략)

품부령으로	. 정한다.
古てること	- 73 21 年・

- 제54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 5 -----

\_\_\_\_\_

-----.

- 1. ~ 7. (현행과 같음)
- 7의2. 제21조의9제7항을 위반하 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8. 9. (현행과 같음)
- ⑥ ~ ⑧ (현행과 같음)
- 제57조(과태료) ① · ② (현행 과 같음)
  - ③ -----

-----

- 1. ~ 1의5. (현행과 같음)
- 1의6.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자
- 1의7.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 한 자
-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